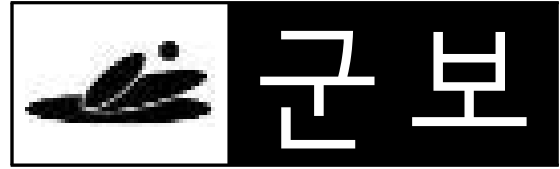


#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46호 2019. 8. 16.(금)

##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19 - 101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1
- 예산군 고시 제2019 - 104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3

##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19 - 1225호 :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주민 공람·공고 ..... 5
- 예산군 공고 제2019 - 1226호 :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주민 공람·공고 ..... 6

## 입법예고

- 예산군 입법예고 제2019 - 1257호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7

회 람									
--------	--	--	--	--	--	--	--	--	--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1)

예산군 고시 제2019 - 101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

## 예 산 군 수

###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507-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충의로 393-20	20190802	신축	20091113	윤봉길의사의 사당인 충의사가 있는 곳으로 윤봉길의사를 기리기위해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60-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9-9	20190802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져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27-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국길 92-6	2019080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지리) 및 고유지명(한국)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87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별리길 451-67	20190802	신축	20091113	삽교읍 두리와 신암면 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656-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1길 106-6	2019080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상몽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101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43-66	2019080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상몽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7-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37번길 22	20190802	신축	20091113	예산로 3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예산군 고시 제2019-104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9.

## 예 산 군 수

###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71-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구성북로 446	20190809		20090825	구항면에서결성면까지연결된도로로구항의(구)자와결성의(성)자를조합하고방위(북쪽)를이용하여구성북로로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71-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구성북로 434	20190809		20090825	구항면에서결성면까지연결된도로로구항의(구)자와결성의(성)자를조합하고방위(북쪽)를이용하여구성북로로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35-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23-11	20190809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117-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삼교평야로 417-67	20190809		20091113	삼교평야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51-9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남로 81-19	20190809		20091113	조곡리의 남쪽도로	
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17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광천길 94-17	20190809		20091113	대치리와 광천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922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두리별리길 473-51	20190809		20091113	삼교읍 두리와 신암면 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이리 620-15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수촌학재길 134-20	20190809		20091113	행정구역명(수촌)과 고유지명(학재)를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웅봉면 계정리 483-1	충청남도 예산군 웅봉면 주령계정길 147-27	20190809		20091113	주령리와 계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창정리 316-17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효창길 180	20190809		20091113	효교리와 창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 예산군 공고 제2019 - 1225호

##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주민 공람·공고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23-2번지 일원, 입침리 333-1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8. 16.

예산군수

## 1. 건 명 :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 주요내용

## 가.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응봉면 후사리 23-2 일원	-	증) 3,333	3,333	-	-
신설	B	주차장	응봉면 입침리 333-1 일원	-	증) 7,430	7,430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신설 - 면적 : 3,3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당호 출렁다리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li> <li>•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li> </ul>
B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신설 - 면적 : 7,4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당호 출렁다리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li> <li>•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li> </ul>

##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9. 08. 16. ~ 2019. 08. 30.(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예산군청 도시재생과(☎339-7704), 응봉면사무소(☎339-8682)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

## 4. 주민의견 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예산군 도시재생과 및 응봉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예산군 공고 제2019 - 1226호****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주민 공람·공고**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140-2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8. 16.

예산군수

**1. 건 명 :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2. 주요내용**

##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조정팀 관리사무소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104-2번지 일원	-	증) 1,324	1,324	-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공공청사 (조정팀 관리사무소)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1,324㎡	• 예산군은 조정실업팀 훈련 및 관리운영을 위 한 공공청사(예산군 공공업무시설) 신설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9. 08. 16. ~ 2019. 08. 30.(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예산군청 도시재생과(☎339-7704), 대흥면사무소(☎339-8642)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

**4. 주민의견 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예산군 도시재생과 및 대흥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예산군 입법예고 제2019-1257호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구역 및 시설물 관리(안 제3조~제5조)
- 시장의 변경 및 취소(안 제8조~제10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제8조 ~ 제10조)



- 임시시장의 관리(안 제11조~제12조)
- 상인회 설립 및 등록(안 제13조~제16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안 제17조~제19조)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20조 ~ 제30조)
-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안 제31조)
- 보칙(안 제32조~제33조)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 8. 14. ~ 9. 2. (20일간)
- 제출방법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기관 : 우편 32435)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 041-339-7253, e-mail : hyoj00ng@korea.kr)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예산군 조례 제 호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국가, 충청남도 또는 예산군(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국가 등이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회 등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설 :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손수레 및 휴게시설 등 적정 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

며, 취소한 내용을 예산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의 관리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시시장의 관리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 제4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인회 등록증을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상인회 대표자 교체 등) 군수는 상인회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인회 등에 대표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경우
2. 제19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
4. 그 밖에 대표자의 자격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17조(시장관리자)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규칙 제14조



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시장관리자의 업무)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구역과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2. 시장 안의 청결 유지 및 깨끗한 환경보존
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4. 입점상인 및 이용객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5. 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의 추진
6.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등

## 제6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상이 국가 등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토지 및 건축물(상인이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등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국가 등의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 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타원형·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 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 점까지로 한다.

제22조(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 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

치 및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군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변상의 책임 등) 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제31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를 철회)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동의의 상대방 및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제8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2. 임시시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
3. 시설물의 위탁,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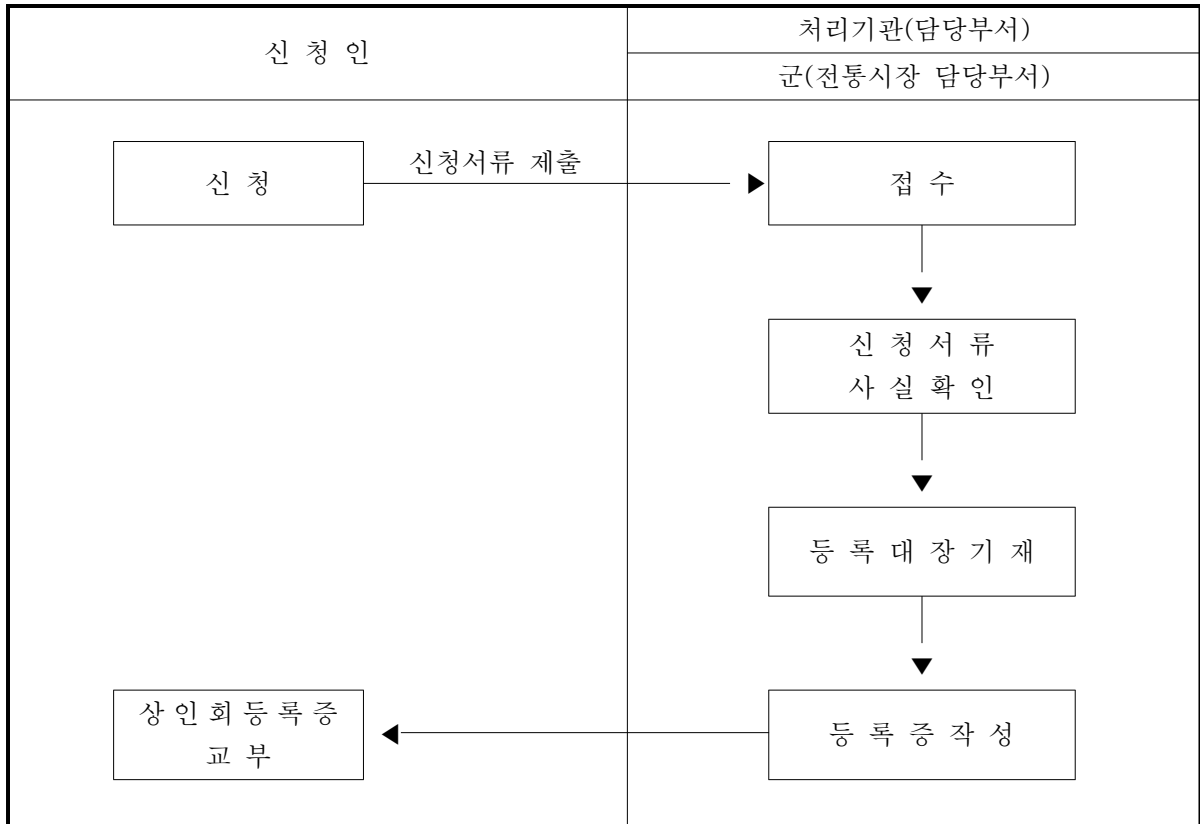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예 산 군 전 통 시 장 및 상 점 가 육 성을 위 한 조 례 안」

성 명 (단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 례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